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춘천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직 혁  
전화 033-240-4320

**보도자료**  
2024. 7. 15.(월)

## 인제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

-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 사망을 초래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오세문)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군기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**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**를 하고, 그 중 **1명을 숨지게 한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를 직권남용가혹행위, 학대치사의 공범**으로 오늘 (7. 15.) **구속 기소**하였습니다.
- 검찰은 **전담수사팀(부부장검사, 훈련소조교병 출신 검사,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)**을 구성하고,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검사 2인이 출석하여 훈련의 위법성을 설명하였으며, **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**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**사안의 진상을 규명**하였습니다.
- 특히,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, 기상조건·훈련방식·진행경과·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**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**으로 확인되어,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(금고 5년 이하)가 아닌 **학대치사죄(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)**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.
- 또한 **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가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 건강상태를 점검**하였고, 심리치료 지원,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**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**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검찰은 **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**하고, 향후에도 **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**하겠습니다.

## 1 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A(여, 27세),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 중대장(대위)
- 피고인 B(남, 25세),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 부중대장(중위)
- 피해자 C(남, 21세, 사망), D(남, 22세), E(남, 19세), F(남, 20세), G(남, 20세), H(남, 21세) ※ 모두 2024. 5. 13. 입대한 훈련병들로 입소 후 10일 경과한 상태

## 2 공소사실 요지

### 직권남용가혹행위(군형법 제62조)

- 피고인 A, B는 공모하여 '24. 5. 23. 16:30경 연병장에서 피해자 D ~ H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, 땀걸음, 선착순 한 바퀴, 팔굽혀펴기 등 법령\*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훈련을 명령·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·가혹행위

### 학대치사(형법 제275조 제1항, 제273조 제1항)

- 피고인 A, B는 공모하여 '24. 5. 23. 16:30경 피해자 C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법령\*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훈련을 명령·집행하는 등 C를 학대하여 같은 날 17:11 훈련 도중 C가 쓰러지게 하고,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C로 하여금 '24. 5. 25. 15:00경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함

\*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, 병영생활규정(육군규정120), 신병교육훈련지침

## 3 수사 경과

- '24. 5. 25. 피해자 사망, 변사체 검시 후 부검 지휘
- '24. 5. 28. 육군수사단 →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사건 이첩
- '24. 6. 18. 경찰, 구속영장 신청
- '24. 6. 19. ~ 21.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→ 구속 전 피의자신문(전담 수사팀 검사 참석하여 구속필요성 설명) → 구속영장 발부
- '24. 6. 27. 경찰, 피고인 A, B 사건 송치
- '24. 6. 27.~ 검찰,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, 휴대폰 압수, 군부대와 피고인 B 주거지 등 압수수색
- '24. 7. 15. 검찰,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학대치사로 구속기소

## 4 수사 의의

군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문성 있는 검사들을 투입하여 전담수사팀(부부장검사, 훈련소조교병 출신 검사,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검사)을 구성하고, 송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였음

- 피고인들은 현역 군인이나,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사망하여 개정(2022. 7. 1. 부터 시행)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음
- 검찰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군부대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하여, 전문성 있는 검사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하는 등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훈련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였음
  - 송치 전,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전담수사팀 검사가 군기훈련의 가혹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,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출석하여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피고인들을 전원 구속함
  - 송치 후, 해당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종전 훈련 내역, 피고인들의 평소 군기훈련 실태에 관한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충실히 수집
-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① 관계법령상 군기훈련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② 기상 여건과 피해자들의 체격에 대한 고려 없이 ③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시켜 피해자 C를 실신하게 하고, ④ 신속히 의료시설로 후송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전체 범행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였음

### \*[위법한 군기훈련(소위 얼차려) 실시]



검찰 보완 수사 및 법리검토를 통해, 법령에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여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하여 **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과실치사(5년 이하)가 아닌 학대치사(3년 이상 : 최대 30년 가능)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음**

- 경찰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직권남용가혹행위죄(군형법) 및 업무상과실치사죄(형법)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으나, 검찰에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통해 학대치사죄(형법)\*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함

- 군형법 제62조(가혹행위) 5년 이하의 징역
- 형법 제268조(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)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형법 제273조(학대, 존속학대)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형법 제275조(유기등치사상) 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- 기상조건, 훈련방식, 신체조건, 훈련 중 피고인들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학대행위에 해당하고,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였음

정신건강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가 **생존 피해자**를 상대로 불안 및 우울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(STAI-T/S,BDI\*)를 실시하여, **치료의 필요성을 점검**하고,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C의 **유족에 대한 심리치료**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피해자지원을 하였음

\*State-Trait Anxiety Inventory(STAI검사, 상태-특성불안척도, 현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과 평소 기질적으로 경험하는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척도), Beck Depression Inventory(BDI, 벡 우울 척도, 다양한 종류의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척도)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 임상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검사임

-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(2급) 소지 검사가 생존 피해자 5인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,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음
- 피해자 C의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 형사 재판 절차상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임

## 5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음 ■■■